

# 손해보험산업과



**박 은 회**  
성균관대학교 교수 보험학회 회장

“  
**화합의 방재서비스는  
 보험사업과 무관한 낭비가 아니라  
 손해보험산업의  
 종합적인 위험관리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

## 머릿말

위험을 관리하는 슬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인류의 조상들은 하느님의 진노라고 믿고 위험관리 수단으로 종교를 선택했다.

바빌로니아에 국가가 형성된 BC 4천년경에는 금융업이 시작되었고, 신용위험(credit risk)의 관리방법으로 貸借保險이라는 제도가 생겼던 것이다.

보험대차가 발전하여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성립된 것이 바로 보험이다. 보험의 성장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손해를 보상하는데 그쳤으므로 위험관리의 책임은 주로 보험가입자에게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사고의 빈도나 강도가 높아지자 보험회사는 인수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를 극소화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긴 제도가 보험물건의 안전점검, 면책조항의 삽입, 자가보험(自保)유도, 할인, 할증 제도, 손해방지의무 등이었다.

그러자 보험가입자도 자위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인수하였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위험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관심은 점차 고조되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위험관리론」이란 학문이 성립하게 되었으며 50년대에는 미국에 「위험과 보험관리협회」(Risk and Insurance Management So-

# 위험관리

ciety, RIMS)가 탄생하였다.

이때까지의 보험학은 주로 보험상품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供給理論이었지만, 60년대 이후는 需要理論으로 바뀌어 보험가입자가 위험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험을 활용할 것인지 등을 논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소비자 중심으로 보험의 개념이 바뀌자 보험회사도 定型제품을 定價로 판던 종래의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맞춤제품(Tailor-made)을 개별 요율로 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물건을 점검해서 안전도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지 않을 수 없다.

손해보험과 위험관리의 관계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립되었으며, 손해보험산업은 종래의 「위험인수기관」에서 「위험관리산업」으로 그 본질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 이른 것이다.

## 우리나라의 실태와 과제

우리나라 손해보험산업에 위험관리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65년 전후였다고 생각된다. 1차 5개년계획에 따라 비료공장과 정유공장이 건설되자 보험가입을 위해서 유럽의 재보험자들과 교섭하게 되었고, 서북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공장을 점검(underwriting survey)하고 요율을 산출했던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기구가 탄생한 것은 시민회관화재 직후 당시의 박대통령 지시로 제정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75년에 만들어진 「한국화재보험협회」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

「화협」은 그동안 「방재협회」(FPA) 기능과 「화재보험협회」 기능을 수행하면서 방재기술의 연구보급, 안전점검을 통한 화재예방, 소방장비기능을 통한 손해방지, 화재보험공동인수를 통한 판매코스트의 절감 등 국민경제와 보험산업발달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개방시대에 알맞는 자유경쟁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81년 이후 4단계에 걸쳐서 금융품이 해체되었고, 나머지 품도 단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긴해가 지배적인 것 같다.

당초 64년에 금융품의 발족을 제안하였을 때만해도 우리나라의 손해보험은 화재보험중심 시장이었고 또 화재보험의 태반은 금융기관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집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와 소모전에서 오는 코스트의 낭비를 시정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보험시장개척을 유도하자는 것이었다.

그동안 화재보험의 비중은 해마다 줄어든 반면 해상·자동차·특종보험 분야가 크게 성장하여, 손보 시장 전체로 볼 때에는 품의 비중이 5%미만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의 기대효과는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머지 품의 해체시나 범위에 관해서는 정책당국이나 회원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겠으나 몇 가지 원칙론을 편다면, 첫째로 방재기능은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안전점검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한국특유의 제도로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흔히 사회보장을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국한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 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원자력손해배상보장법」과 더불어 사회 위험에 대한 책임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국가가 법을 제정해서 안전점검을 의무화했으면 보험을 누가 인수하더라도 그 비용은 마땅히 부담해야 옳을 것이다.

둘째로, 점검과 보험가입은 꼬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만일 분리하더라도 점검결과가 보험료계산에 직접 반영되도록 유기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풀체제가 10여년동안 양성해 온 기술인력의 해고사태로 번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업무량이 감소되더라도 그 기능이 회원회사로 이관되는 것이므로 업무와 함께 전직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넷째로, 잔존하는 품은 가급적 일원화하는 것이 기

술의 축적과 경영코스트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만일 화재이외의 종목을 협회가 담당하게 된다면 명칭을 「한국위험관리협회」(Korea Risk Management Association)로 개정하여 손보산업과 관련되는 위험관리연구소 기능을 담당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건축기술과 소방기술의 발달로 순수한 화재위험의 빈도나 강도는 감소되는 반면 폭발·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재난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화재보다는 종합 방재의 방향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또한 미국의 RIMS와 제휴하여 산업별 위험관리기법을 습득한다면 한국에서도 분야별세미나를 개최하여 위험관리지도도를 통한 산업과의 연계로 보험의 이미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에 와서 각 손보사가 위험관리과를 설치하여 기업의 위험관리컨설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낮은 값은 있으나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험회사가 정형제품을 정가로 파는 시대는 사라지리라고 본다.

기업마다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험모델의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뜻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화재와 관련 종목」(fire and allied lines)의 비중은 손해보험료의 4%에 불과하지만 종합보험(multiple peril)은 19%나 차지하고 있다.

## 보험사업의 위험관리

지금까지 손해보험산업이 일반기업이나 사회의 위험관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이번에는 보험산업 자체의 위험관리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보험회사는 가계나 기업의 위험을 전가받아서 집중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흔히 「언더라이팅」이라고 막연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위험관리 기법으로 따지면 여섯가지의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첫째, 위험의 발견 또는 확인이다. 보험설계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기업이나 가계가 직면하는 모든 위험을 점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이다.

둘째, 위험의 분석이다. 확인된 위험의 빈도와 강도를 평가하여 보험금액과 보험료를 결정하는 과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사고의 원인(hazard)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회피나 전가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보험의 경우에는 인수거부나 면책이 될 것이다.

넷째, 사고의 예방이다. 보험을 인수하였다면 피보험자와 위험을 같이하고 있는 셈이지만 직접 관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인·할증제도나 방재비용 등으로 사고예방을 유도하게 된다.

다섯째, 손해의 극소화이다. 시설의 분산이나 방재시설 등은 보험인수 때에 이미 점검하고요율에 반영하였겠으나 사고후의 손해방지의무와 비용 보상으로 손해의 극소화를 유도하게 된다. 또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증거를 보존하거나 긴급조치를 취함으로써 손해를 경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가 손해의 복구 또는 재무(financing)이다. 보유, 분할 및 전가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보험회사의 경우 보유는 자사의 보유액결정을 뜻하는 것이며, 분할은 공동보험을, 전가는 재보험을 말한다.

이러한 여섯가지 과정을 통하여 보험사업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기업을 곧 위험관리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다.

보험의 이상은 동질위험에 처한 다수의 경제 주체가 최소의 비용 부담으로 경제안정을 확보하는 것인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를 지필하게 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손해를 줄이는 도리 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험관리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사고의 감소에서 얻는 소득이 더 크다면 총비용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이치가 성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업비용의 인상폭이 손해율의 감소폭보다 적다면 보험회사의 수익개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중이나 국가경제에도 플러스가 된다는 뜻이다.

이와같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화협이 나아가야 할 진로는 발전적으로 모색될 수 있으리라 본다. 화협의 방재서비스는 보험사업과 무관한 낭비가 아니라 손보산업의 종합적인 위험관리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언더라이팅·서베이라 보험인수, 그리고 손해사정은 분리될 수 없는 일관작업이지만 만일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재삼 강조하면서, 앞으로 화협의 진로가 발전적으로 모색되어 손보산업의 위험관리체제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싶다. ■